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지역균형발전”을 “균형발전”으로, “발전역량”을 “성장역량”으로 일괄 변경함(제명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균형 성장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정책 및 예산·기금에 대하여 균형 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제11조의3).
-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균형성장시책 지원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함(안 제76조 등).

II. 검토의견

1.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 추가 등(안 제63조)

- 안 제11조의3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책 및 예산·기금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1조에서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및 초광역특별협약(이하 “특별협약”이라 함)을 체결할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에 관련된 현행법 제63조¹⁾제8호에서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특별협약 중 하나인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안 제11조의3에 따른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예산·기금의 선정 기능이 현행법 제63조 중 다른 각 호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 제63조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는 개정 내용 이외에는 다른 개정 사항이 없음.

이에 안 제63조제8호 중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특별협약”으로

1)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중합계획과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
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
요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11.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하고, “안 제11조의3에 따른 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하여 마련함.

개정안	수정의견
제63조(기능) ----- ----- 1. ----- <u>균형성장</u> ----- ----- ----- 2. ----- <u>균형성장</u> ----- ----- ----- 3. (현행과 같음) 4. ----- <u>균형성장시책</u> --- ----- ----- 5. ~ 13. (현행과 같음)	제63조(기능) ----- ----- 1. ----- <u>균형성장</u> ----- ----- ----- 2. ----- <u>균형성장</u> ----- ----- ----- 3. (현행과 같음) 4. ----- <u>균형성장시책</u> --- ----- ----- <del>5. ~ 13. (현행과 같음)</del> <u>5. ~ 7. (현행과 같음)</u> <u>8. 특별협약의</u> ----- ----- <u>9. ~ 12. (현행과 같음)</u> <u>13. 제11조의3에 따른 균형성장영</u> <u>향평가 대상의 선정 및 평가 등</u> <u>에 관한 사항</u> <u>14. (현행 제13호와 같음)</u> ~~14.~~ ----- <u>균형</u>
14. ----- <u>균형</u>	~~14.~~ 15 ----- <u>균형</u>

<u>성 장</u> ----- ----- -----	<u>성 장</u> ----- ----- -----
------------------------------------	------------------------------------

2. 대통령령 등의 정비 기간을 고려한 시행일 유예기간 필요(안 부칙 제1조)

- 안 부칙 제1조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균형성장영향평가에 관한 개정규정(안 제11조의3)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초광역특별계정에 관련된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균형성장영향평가에 관한 개정규정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개정규정(안 제9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의 설정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령의 정비를 위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부령의 정비를 위해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

이에 안 제11조의3 외에 안 제9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마련함.

개정안	수정의견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6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90조, 제9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3, 제31조, 제31조 ^{제9조, 제11조의2} 의2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 ⁶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6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90조 ^{제94조} 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3. 기타 사항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 기 도)